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장 서진희	044-200-5610
		사무관 김지환	044-200-5623
		주무관 조수정	044-200-5624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과장 배봉성	051-720-2560
		연구관 조삼광	051-720-2580
		연구사 구명성	051-720-2582

I. 사업개요

1. 목적

-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쉽게 부스러지는 발포폴리스티렌(EPS,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도모

2. 근거법령

-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제1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3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9년	20년	21년	22년		
인증부표 보급률 (%, 누적)	66	28.1	31.5	38.3	47.3	'24.1	(총 누적 보급량 ÷ 총 부표 55백만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22,558	122,558	122,558	122,558
- 국비	42,482	42,482	42,482	42,482
- 지방비	45,791	45,791	45,791	45,791
- 자부담	34,285	34,285	34,285	34,285

*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II.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동일 부표 크기 기준이나, 동일 부표 크기의 부표의 확보가 인증부표와 동일한 용량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가 어장 내 부존재하거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의 일부 파손으로 용량이 줄어든 경우 등의 사유로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용량 또는 동일 수량으로 대체 가능)의 100%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신규어장 제외)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 지자체별 어업 실정 및 재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회수율을 60~100%로 조정할 수 있음
 - * 사업주관기관(해수부)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지원대상

-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 인증기준(별표 1)에 적합하고,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인증)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지원 대상이 어촌계 등 생산자 단체의 경우 단체별 총괄하여 신청하되 구성원 개별로도 신청(신청시 총괄 신청서 및 개별 신청서 별도 작성: 개별 신청의 합이 총괄 신청의 합과 동일)
 -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 설치하는 양식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저조할 경우에는 어장시설(정치망 등 부표), 어선·어구(구획어업 등), 양식장 뗏목 순으로 수요조사 실시

[인증부표 지원 대상]

구분	양식대상	비고
발포되지 않은 부표	○ 모든 양식장 (이종(異種)으로 재질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	-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 부표(EPE)	○ 김 등 뒤집기 작업을 필요로 하는 해조류 양식장 (뒤집기 작업용에 한함) ○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100L 이상)	-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EPE)에 동일재질로 코팅·피복된 부표*	○ 모든 양식장	-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및 발포 폴리에틸렌(EPE)에 다른재질로 코팅·피복된 부표	○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100L 이상)	-
발포폴리스티렌(EPS)에 코팅·피복한 부표**	○ 어류·전복 가두리와 양식장 뗏목(100L 이상)	하반기 철회

* 발포 피복부표의 피복재는 내부 발포재와의 재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재질로 하지 않고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부표여야 함. 단, EPS 포함 부표는 다른 재질로 피복재 사용 가능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시행(23. 11. 13.)에 따라 '23년 하반기 품질인증위원회부터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을 포함한 부표는 인증하지 않으며, 기존의 인증도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①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수요가 저조한 경우, 어장시설(정치망 등 부표), 어선·어구(구획어업 등), 양식장 뗏목 순으로 지원
- ② 양식장 전체의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 인증부표로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지원 신청 시 추진 계획서 제출)
- ③ 당해연도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④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⑤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 ⑥ 우선순위는 지자체가 지정한 인증부표 100% 보급 시범해역 내 양식장, 소득이 낮은 자,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량이 많은 자 등 시도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 * 지자체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현황에 적합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4년까지 양식장스티로폼 부표제로화 달성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인증부표 100%보급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관리

- 별표 1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인증부표 구입비
- 지자체에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보급·회수·보관·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사업대상자의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에 적합한 인증부표만 구매 지원

6. 지원조건 및 방식

《인증부표 보급 지원》

- 지원조건: 국고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 * 자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 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 시·도(시·군·구)
 - * 수협중앙회 일부업무 위탁 수행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

- 지원조건: 국고 30% 지방비 70%
- 사업시행기관: 시·도(시·군·구)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인증부표 보급 지원》

- 지원예산: 인증부표 보급지원 '23년 국고 총 40,000백만원
- 지원기준: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 제품별 지원 기준가격은 수협중앙회와 업체간 계약된 어업용 선수품 구매단가 적용

《페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

- 지원예산: 페스티로폼 부표 처리지원 '23년 국고 총 2,482백만원
- * 폐기물 처리비용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금액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3호 「공사입찰유의서」(20.12.24)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 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지역여건·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되,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8. 중요재산 관리: 해당없음

9. 인증부표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 지정 및 업무 범위

- 국립수산과학원은 인증부표 품질인증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인증 절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인증기준 적합성 검토
- 품질인증위원회 소집 및 운영, 인증 결과 보고(국립수산과학원)
-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공장점검, 시판품 불시 조사, 특별현장 점검 등) 및 결과 보고
- 기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국립수산과학원은 품질인증 업무 위탁시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10. 인증부표의 품질검사·인증 및 유효기간

- 부표 생산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부표 인증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후 시험성적서와 함께 인증신청서(동일부표 인증포함)[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겉봉투에 “인증신청서 재증” 명기).

-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우체국 소인분('23년의 경우 3.31, 6.30, 9.29, 12.29.)까지 유효

○ 서류제출 주소: (우) 46083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인증부표 업무담당자 앞

- * 공인시험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인증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누락 또는 기준이 추가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동시에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신청서 첨부 서류 번호대로 정리한 후, 짐계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기재 착오·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발표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거짓서류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부표 인증 받은 경우 지원사업 계약 등 즉시 취소 및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사업 참여 불가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사본제출도 가능
- 인증신청서의 부표(제품)명과 시험성적서의 부표(시료)명은 동일해야함

-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매분기 종료 후 30일 전까지 부표(제품)의 인증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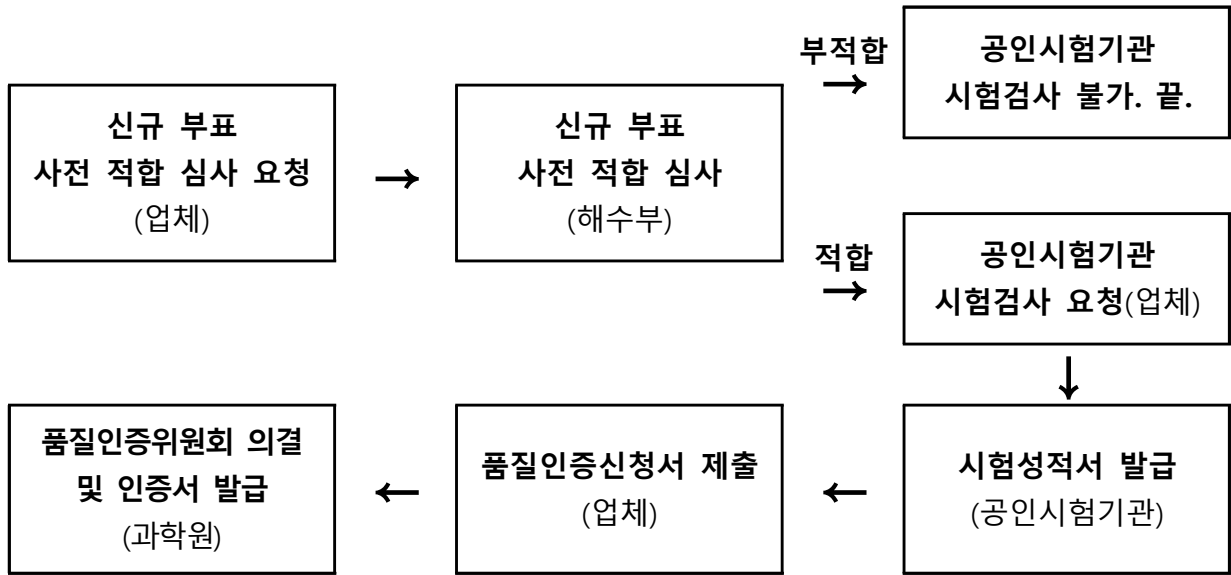
- 국립수산과학원은 인증서[별지 제3호 서식] 교부 및 수협중앙회에 통보
-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는 부표의 적합성, 부표의 인증여부, 동일부표 인증, 시행지침개정(안), 결함의 경중에 따른 수거 필요성 여부 등 동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 품질인증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시험기관 등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인증부표 시험결과(각 항목별)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받은 자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이내에 시험성적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이 경우 사전에 공인시험기관과 시험성적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구비서류 등을 협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각 시험항목 어느하나라도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동일부표 포함)의 단가계약 해지를 원칙으로 함

- 기 발급된 시험 항목 외 추가·변경된 항목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결과(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규 재질 또는 모양 등의 부표를 인증받고자 하는 업체》



- 부표 생산업체는 신규 재질 또는 모양의 부표, 이중재질이 다수 포함된 부표 등 인증부표 지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부표를 생산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규부표 사전 적합심사위원회 상정을 요청한다.
- 공인시험기관은 신규 재질 또는 모양의 부표, 이중재질이 다수 포함된 부표 등 인증부표 지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부표의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부표 생산업체에 신규부표 사전 적합심사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통보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당 부표의 인증부표 적합여부에 대하여 환경유해성, 재활용 용이성, 어업인의 사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 2회(2월, 7월) 신규 부표 사전 적합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 여부를 의결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 * 신규부표 사전 적합심사 위원회는 해양환경, 재활용 용이성, 어업양식업에서의 사용성 등과 관련한 민·관·산·학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해양수산부 담당자는 당연직), 업체는 인증받고자 하는 부표 실물 또는 발표 자료를 지참하여 위원회에서 설명·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 부표 생산업체에서 신규부표 사전 적합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증부표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건은 품질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11. 기타사항

- 본 시행지침으로 인증받은 부표는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에 한함. 다만, 지자체 등 사업으로 인증부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지침상의 목적 및 규정에 따라야 함
- 인증부표 인증을 받은 업체는 조사반(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품질인증 업무대행 기관, 지자체, 수협 등)이 업체점검 시 공장출입(해외 OEM공장은 PT자료 등으로 대체 확인), 부표 검사·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및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 국립수산물과학원, 공인시험기관에 통보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확정 예산 시·도에 통보
- 신규부표 사전 적합심사 개최에 관한 사항

국립수산물과학원

-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인증부표 인증 관련 신청서 관리, 검토, 품질인증위원회 개최를 포함하는 품질인증 절차 대행에 관한 사항
- 인증서[별지 제3호 서식] 교부 및 수협중앙회에 통보
- 품질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증제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시·도(시·군·구)
- 예산배정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23.1월까지)

○ 사업자 선정(공고)

- 관할 어업인, 사업대상자, 관련 수협, 관련 업체들에게 사업 홍보 실시
- 신청절차: 참여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
- 구비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서 접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 * 부표 소요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관리주체(사·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업희망자로부터 받은 경우 수협중앙회(단위조합)에 해당 신청서(사본)를 통보하여야 함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에서는 인증부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동 사업시행지침을 알려서 검사 및 인증신청(동일부표 포함)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신규사업자를 위해 수협중앙회기자재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및 지침 등 게시
- 수협중앙회(회원조합)는 시·군·구에서 사업자 공고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사업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는 사업에 필요한 제품별 공동구매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제품의 구매단가 결정 시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해 산출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의 계약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동 지침에서 정한 우선순위 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 수협중앙회(회원조합)에 통지하고,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 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시·도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배정

4. 사업 시행 단계

《사업집행》

시·도(시·군·구)

- 사업지침과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지도·감독 철저
- 지원 인증부표가 실제로 어장의 스티로폼 부표와 대체될 수 있도록 폐스티로폼 회수 및 사후 처리 철저
- 인증부표 납품 및 검수 시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 확인

수협중앙회(단위조합)

-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조달업무(부표 수 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등) 및 보조업무 수행
- 납품 및 검수 시 현장 필히 방문 확인하고, 검수 과정(사진 등) 기록 보관
 - 인증부표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고 표시사항과 인증규격이 다른 경우 검수 불가 처리

《사업정산》

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수협중앙회(단위조합)에서 정산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 검토 후 최종 정산하여 수협중앙회(단위조합) 입금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함
 -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회수(각 지자체별 회수 기준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신규 양식어장 제외)
 - * 지자체에서 발급한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회수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매년 12월말, 사업추진 완료(정산) 후, 최종보고([별지 제5호·6호·11호 서식])
 -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단위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보고
 - *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실적(사업자별)] ** [별지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실적(품종별)]
- 페스티로폼부표 처리는 매년 12월말, 사업추진 완료(정산) 후, 최종보고([별지 제5호 서식])

수협중앙회(단위조합)

- 시·군·구로부터 받은 사업대상자 신청서 상의 어장부표 사용현황 등 관련 통계[별지 제4호 서식]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증부표 현황(업체명, 연락처, 품목 모델명, 규격, 공급가격, 부표사진 등)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별지 제8호 서식] : 점검 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 사업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인증부표 구매 어업인(시군별 사업자 10% 이상) 대상으로 인증부표 실제 설치여부 확인 및 인증부표 사용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사업추진시 함께 보고
 - * [별지 제9호 및 제13호 서식]: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 해양수산부에서 사후점검관련 시료수거 협조가 있을 경우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부표 생산업체에 현지조사 및 공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생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 지원한 인증부표가 다른 어장에 설치되지 않도록 점검·관리

수협중앙회(단위조합)

- 시·군·구에서 부표 품질평가를 위한 제품 수거 시 운송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여야 함
- 수협중앙회는 당해 계약된 업체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미리 협의하여 사후관리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립수산물과학원

- 인증부표 사후관리 요령[별표3]에 따라 매년 사후점검(시판품조사, 공장점검, 특별점검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후관리 결과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 * Ⅱ의 9항에 의거 업무대행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 추진 결과에 대하여 품질인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처분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인증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자료 조사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감액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수협중앙회,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인증부표 보급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 일정: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해양수산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 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IV. 202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3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수요조사(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 사업신청: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2023년 2월 말 이내[별지 제10호 서식]

2. 2024년 이후 향후 인증부표 정책 추진방향

-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코팅·피복되지 않은 발포형 부표에 대해 코팅·피복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다.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시행 후 인증부표 업체가 스티로폼 부표를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인증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
- 시험기준 외 환경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 재활용 용이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인증부표 지원에서 제외 및 배제를 검토할 수 있다.

V. 참고자료

○ 용어의 정의

- (사출형 부표) 사출 성형한 합성수지를 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융착한 속이 비어있는 부표
- (발포형 부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을 발포 성형하여 만든 부표
- (연질피복형 부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필름, 시트 재질을 코팅·피복처리하여 발포재의 모든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표
- (경질피복형 부표) 충분한 강도를 가진 사출 성형한 합성수지 내부에 발포 부표를 포함하여 발포 부표의 모든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표
- (기타) 합성수지 외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사출, 발포, 코팅·피복형에 해당하지 않는 부표

○ 사업 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통보 <해수부→도→시·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자금배정 <시·도→해수부>	사업자 신청 공고 <시·군>
사업자 선정 신청 <어업인→시·군>	사업자 확정 및 통보 <시·군→어업인, 수협>	부표 구매 신청 및 자부담 납부 <어업인→수협>
부표 생산 및 납품 <부표업체→어업인>	부표 검수 및 정산 신청 <수협 및 시·군→시·군>	부표 품질 확인 및 관리 <수협, 지자체>
사업 감독 및 실적 보고 <시·군→도→해수부>	보조금 정산 및 지급 <시·군→수협→부표업체>	사업 정산보고 <시·군→도→해수부>

○ 인증부표 인증절차

인증부표 인증 신청 (<u>매분기 종료일(매분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일 전일로 한다) 17시까지</u>) <부표업체→국립수산과학원>	인증부표 인증 심사 <국립수산과학원, 품질인증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부표 사전 적합심사 실시	인증부표 인증 결과 통보 (<u>매분기 종료후 30일까지</u>) <국립수산과학원→해당업체, 관련기관>
부표 구매 단가 산정 및 단가 계약 체결 (<u>매분기 인증 결과 통보 후</u>) <수협↔부표업체>	단가계약 체결 결과통보 <수협→시·도, 해수부>	인증부표 생산·판매 <부표업체>

※ 각 기관별 업무사정 등에 따라 인증절차의 일정은 변동 가능

인증부표 인증기준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하고 있는 부표 중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대체할 목적으로 생산된 부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 인증부표 인증시험 기준에 다음의 인용표준을 인용하여,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인증을 신청할 당시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또한 인증표준의 개정에 따라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표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인증부표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폐지 전 표준을 잠정 적용한다.
 -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시험방법
 - **KS M 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 **EN 71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3. 시험 기준

3.1 품질 관련 기준

- 겉모양은 4.4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겉모양은 변형 및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나. 핀홀, 기포 및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다.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 라. 표면을 발포한 부표는 입자 사이가 견고하게 융착되어야 한다.
- 마. 표면이 합성수지재인 부표는 예리한 돌기 또는 거스러미가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3.2 성능 관련 기준

○ 성능은 4.에 따라 시험하며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인증부표의 성능기준

시험항목		성능기준				시험방법	
치수(규격, 무게, 부피 등)		부표의 길이, 높이, 무게(사진포함), 부피 등				4.5	
부력(kgf)		[(표시부피(L)×0.7) - 자체무게(kgf)] 이상				4.6	
내면밀도(kg/m ³)		18 이상				4.7	
내충격성 시험		표면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을 것				4.8	
해양환경폭로 시험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80% 이상일 것				4.9	
열피로도 시험		부표 외형의 균열, 파손 및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초기 부력의 90% 이상일 것				4.10	
로프조임시험		표면의 패임, 갈라짐이 없을 것				4.11	
내압시험(압력표시)		초기 부력의 90 % 이상일 것(1bar 이상)				4.12	
사출접합부 피로시험		초기 부력의 90 % 이상일 것				4.13	
결속고리하중안정성시험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이 없을 것				4.14	
촉진내후성 (2000시간)	연질 피복부분	촉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비(%)				4.15	
	발포형, 사출형, 경질피복 부표		80 이상		표면에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환경유해성	유기주석화합물(TBT,TPT)		검출되지 않을 것				4.16
	중금속(mg/kg) (Sb,Cr,As,Pb,Ba,Hg,Cd, Se)		안티모니(Sb)	560 이하	크롬(Cr)	460 이하	
			비소(As)	47 이하	납(Pb)	23 이하	
			바륨(Ba)	18,750 이하	수은(Hg)	94 이하	
			카드뮴(Cd)	17 이하	셀레늄(Se)	460 이하	
난연제(mg/kg)		PBBs, PBDEs TBBPA, HBCD 검출되지 않을 것					
재질시험(정성분석) 연질 피복부표, 경질 피복부표		내·외부 재질 성분이 동일할 것				4.17	

- * 부표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에 대해 임의의 부위를 채취하여 환경유해성 시험 3종을 실시하며, 내외부 모든 재료에 대해 환경유해성 시험 3종을 실시한다.
- *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질(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결과를 적용하여 촉진내후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인증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종전 인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제품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 * 촉진내후성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동일 원료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류 및 비금속계열: 재질시험(정성분석), 밀도, 회분(발포재질은 제외)
 - 금속계열: 재질분석(Si, Fe, Cu, Mn, Mg, Cr, Zn, Ti, Al)
- * 인증부표(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외 새로운 부표(모양, 재질 등)를 생산·인증받으려는 경우 인증시험 접수 前 해양수산부의 신규부표 사전 적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4. 시험방법

4.1 시험편의 상태 조절

- 시험편은 온도 (23±5) °C, 상대습도 (50±10) %로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시험 전에 16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2 시료 및 시험편

- 시료는 원칙적으로 성형 후 24 시간 이상 경과한 제품 중에서 채취하고, 시험편은 시료 몸체에서 잘라낸다.

4.3 수치의 뺏음법

- 수치는 KS Q 5002에 따라 끝뺏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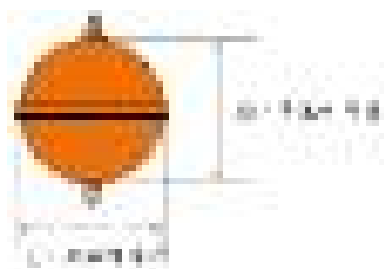
4.4 겉모양

- 표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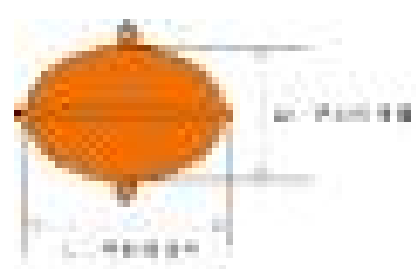
4.5 치수



(A타입) $(\pi \times D^2)/4 \times L + (\pi \times D^2 \times H)/3$



(B 타입 부피) $\pi \times D^3/6$



(C 타입) $(\pi \times D^2 \times H)/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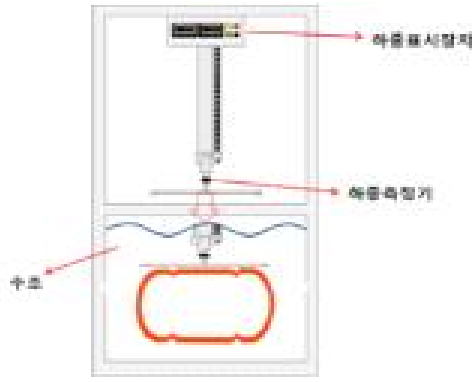
[그림 1] 인증부표의 치수·부피 측정

- 부표의 길이는 3개 이상의 부표시료를 이용하여 가장 긴 부분을 1 mm 정밀도로 3회 측정하고, 높이는 부표의 1 mm 정밀도로 시료별로 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한다. 부표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 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하거나, 각 부위의 수치가 표시된 제품제작서 등과 비교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그림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표의 무게는 검교정된 전자저울(정밀도 0.01kg 이상)을 이용하여 kg 단위로 측정한다. 무게는 3개의 이상의 부표(시료)를 대상으로 각각 측정하고 산술평균값을 계산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 계산 부피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며, 그 외 모양이 특이한 경우에는 산술적인 계산식에 의해 측정 계산하고, 그림으로 측정 위치를 표시한 후 계산식을 표현하여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계산 부피는 리터(L)로 나타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한 후 정수자리로 표현한다.
- 치수·부피와 관련하여 3D 형상측정기(정밀도 0.01mm)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4.6 부력

- 부력 측정 장치 안에 부표를 설치한 후 표면이 수면 아래 20 cm까지 하중을 가하고 부표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정지한 후 0.1 kgf 의 정밀도로 하중을 측정한다.



[그림 2] 부력 측정 장치 및 부력시험 모식도

4.7 내면밀도 [발포용 부표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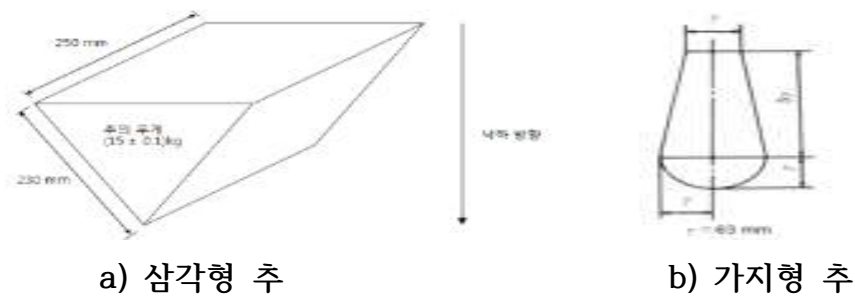
- 시험편은 부표의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두께 50 mm, 길이 50 mm, 너비 50 mm 크기 2 개를 잘라낸다. 표면을 피복한 부표는 표면의 피복 재료를 제거하고 표면층의 시험편을 채취한다.
- 채취한 시험편을 (70±5) °C에서 24 시간 건조한 후, 각각의 밀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2 개의 평균값으로 각 층의 밀도를 나타낸다.
- 시험편의 부피는 두께, 길이 및 너비 각각 3 곳을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치수는 0.5 mm, 질량은 0.1 g의 정밀도로 측정한다.

$$\text{밀도(kg/m}^3\text{)} = W^1/V^2$$

1) W : 질량(kg) 2) V : 부피(m³)

4.8 내충격성

- 부표를 두께 (2±1) cm 금속판 위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된 부표의 상단 표면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200 cm 높이에서 삼각형 추 또는 가지형 추 [그림 3]를 낙하시켜 부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발포부표에 피복·코팅한 부표는 [그림 3]의 a)삼각형 추를 사용한다. 삼각형 추는 한 변이 230 mm인 정삼각형 모양으로 길이는 250 mm,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 발포부표에 피복·코팅하지 않은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5±0.1) kg 이어야 한다.
- 사출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한다. 가지형 추의 무게는 (10±0.1) kg 이어야 한다. 사출부표의 충격지점은 접합부위가 아닌 가장 두께가 얇은 곡면 부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 기타 부표로 에어셀, PET병, 알루미늄 및 PVC 재질 부표는 [그림 3]의 b) 가지형 추를 사용하며, 추의 무게는 (10±0.1) kg 이어야 한다. 충격시험은 부표의 몸통에서 가장 두께가 얇은 부위를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여러 개의 셀을 이용하여 부표 다발을 구성한 경우에는 부표다발을 결속하는 사출품을 충격지점으로 한다.
- 상기 이외의 부표는 공인시험기관이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인증부표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험법을 결정한다.



a) 삼각형 추

b) 가지형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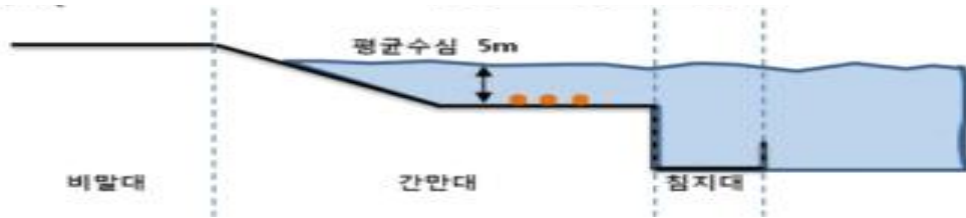
[그림 3] 내충격성 시험용 추의 종류

4.9 해양환경폭로시험

- 부표의 해양환경폭로시험은 평균수심 5 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표 2]의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된 후, 2 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였을 때, 수압을 받는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초기부력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로프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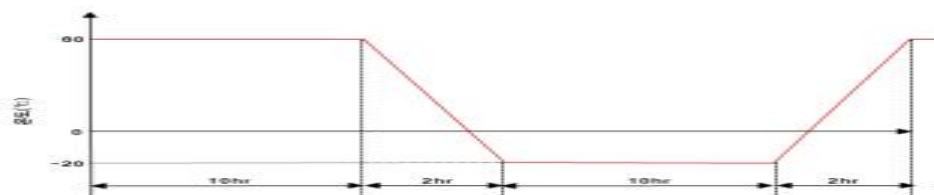
합 사 수	무 게	두께
3합	9.6kg / 200m ± 10%	10mm



[그림 4] 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를 이용한 해양환경폭로시험 모식도

4.10 열피로도 시험

- 부표를 제품상태 그대로 시험을 수행한다. 만일 부표의 크기가 열피로도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 하여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다.
-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60±2) °C에서 10 시간, (-20±2) °C에서 10 시간을 유지한다. 이 시험을 1 cycle로 하여 15 cycle 시험을 실시한다. 단, 1cycle 내의 감온 및 승온 시 온도변화는 분당 (0.6 ± 0.2) °C로 한다.
- 열피로도 시험이 종료된 직후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부표 외형의 균열, 파손 및 찢김 등이 없어야 한다. 외관검사가 종료되면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담수에 침수 시킨 후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력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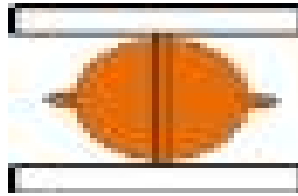


[그림 5] 열피로도 시험(1 cycle)

4.11 로프조임 시험 [발포형(해조류 양식용)]

- 로프조임시험은 완제품 형태의 부표를 로프조임 시험기에 거치한 후, 표준 로프를 이용하여 2회 반복 로프조임시험을 실시한다.
- 표준 로프 및 부표에 가해지는 표준 모터의 제원은 [표 3] [표 4]와 같다. 로프 조임시험 후, 부표의 표면이 패임으로 인한 파손 및 갈라짐이 없어야 된다.

- 피로시험이 종료되면 부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부표의 상단이 수면아래 (20±2) cm 의 깊이로 24 시간 동안 침강 시킨 후 부력을 측정한다.



[그림 8] 하중 가압판과 사출 접합부위의 고정 위치

4.14 결속고리하중 안정성 시험[로프를 결속하는 고리가 있는 부표에 한함]

- 사출형 부표의 상·하단에 로프를 결속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경우, 결속 고리에 로프를 매달아 5,0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여 부표 및 결속 고리의 파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4.15 축진내후성 시험

- KS F 2274의 6. 시험방법 표 2 노출시험방법 WX-A에 따라 시험편을 축진열화 시킨다.
- 축진내후성 시험시간은 2 000 시간으로 하며, 성능은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타포린 계열 재질은 Q-UV 시험기를 이용해 축진내후성 시험을 진행한다.
- 축진내후성 시험 전·후 연질 피복 부표의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은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표 5]과 같이 시험하며, 신장률 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 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단, 표면을 발포한 부표나 사출형, 경질 피복 부표 등은 축진내후성 시험 후에 표면의 균열, 파손, 녹아내림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E_B^{1)}(\%) = (E_1^{2)}/E_0^{3)}) \times 100$$

1) E_B : 신장률 비(%) / 2) E_1 : 축진내후성 시험 후 신장률(%) / 3) E_0 : 축진내후성 시험 전 신장률(%)

[표 5] 축진열화 전·후 신장률 시험조건

표면재료	시험편	시험 속도 (mm/min)	시험 수 (개)
폴리우레아 계열	KS M 6518의 5.2.1의 아령형 3호형	500	3
타포린 계열	KS K 0521의 8.2 시험편	100	3
폴리에틸렌(PE) 계열	KS M 3001의 6.1 시험편 그림 1. 2호형	500	3
폴리프로필렌(PP) 계열	KS M ISO 527-3의 그림 2. 5호형	500	3

4.16 환경유해성시험

- 부표의 구성재질이 다른 경우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환경유해성시험을 실시한다.
- 부표의 내부에 발포재료가 포함된 연질 피복부표 또는 경질 피복부표의 경우에는 내·외부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환경유해성시험을 실시한다.
-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은 KS K 0737에 따라 실시한다.
- 중금속 시험은 EN 71 Part 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난연제 시험은 KS C IEC 62321, KS M 1072에 따라 실시한다.
- 내부에 발포재료가 포함된 경우 내부 중심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4.17 재질시험

- 부표의 내부와 피복이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였을 경우, **KS M 0024 9**. 정성분석 시험방법에 따라 내부와 피복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5. 검사

-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 방법으로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하여 검사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표시사항

- 인증부표는 스티커를 제외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제품에 표기하여야 한다.

가. 제품명(제조연도)	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나. 치수(규격, 부피(L), 무게(Kg) 등)	마. 내압시험 결과(1 ~ 3 bar)
다. 제조업체명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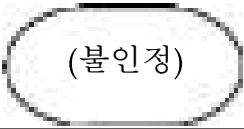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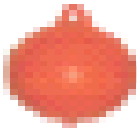




- 인증부표 인증을 받기 위한 부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치수, 무게, 가로 세로비**를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부표 사진을 포함한** 공인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치수와 무게의 값과 $\pm 3\%$ 오차범위 내에서 신청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부피는 $\pm 5\%$ 오차범위 내에서 표기할 수 있다.

[별표 2] 동일부표 인증 기준 및 예시

□ 인증부표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부표와 크기가 다른 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동일 제품으로 확인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품질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동일 재료, 동일한 제품 공정으로 생산되고 별표 2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동일부표 확인을 받으려면 품질시험을 실시한 기준부표와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 규격 및 재질 관련 설명서, 제품 제조 관련 사진 및 설비 사진, 기타(동일모델 증명서류 등)

항목	동일부표 기준	예시	
		기준부표	여부
라운드 비율	○ 육안검사 시 곡률의 변화가 현저하여 기준부표의 형태와 다른 경우 불인정	 (기준부표)	(인정)
		 (불인정)	(불인정)
고리갯수	○ 용도에 따라 결속고리(돌출, 함몰)는 4개까지 인정하나, 고리로 인해 본래 형태가 바뀌는 경우 불인정	 (기준부표)	(인정)
		 (기준부표)	(인정)
이음새골	○ 홈의 방향(가로↔세로, 혼합), 개수 (0개→1개 이상)가 변할 경우 동일부표 인정 단, 이음새골을 추가하여 부표의 구조가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불인정 가능	 (기준부표)	(인정)
		 (기준부표)	(인정)
접합부위	○ 접합부위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동일부표 불인정	 (기준부표)	(불인정)
가로세로 비율	○ 가로, 세로 비율이 같아야 함. 다만, 20% 이내의 비율은 인정		
공통사항	○ 동일부표는 기준부표와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달라야 함 ○ 기준부표와 재질(납품원료)이 동일해야 하며, 색상은 달라도 됨. ○ 기준부표별 인정 동일부표는 5개(기준부표 포함) 이내로 한정함.		

인증부표 사후관리 요령

1. 사후관리 종류

- ① 공장점검: 인증부표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생산현황 등 공장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을 방문하는 조사
- ② 시판품조사: 부표 제조업체가 제조한 부표를 출고한 이후에 인증부표가 성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불시에 실시하는 조사
- ③ 특별현장점검: 인증 받은 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인증 받은 자의 의무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④ 인증부표 생산업체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표 3-1, 3-2, 3-3의 생산 및 납품일지 및 반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불성실하게 관리할 경우 차년도 인증부표 인증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여부를 판단한다.

2.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 ① (경결함)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 ② (중결함) 물품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 ③ (치명결함) 어업인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본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구분	제품 검사 항목	결함구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1	표시사항	○		
2	치수·부피		○	
3	무게		○	
4	내면밀도		○	
5	해양환경폭로 시험		○	
6	열피로도 시험		○	
7	로프조임 시험		○	
8	사출접합부 피로시험		○	
9	결속고리하중 안정성 시험		○	
10	축진내후성 시험		○	
11	재질시험(정성분석)		○	
12	부력			○
13	내충격성 시험			○
14	내압 시험			○
15	유기주석화합물			○
16	중금속			○
17	난연제			○

* 사후점검 계획수립시 사후관리 종류에 따라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치수, 무게 오차범위 ±3%, 부피는 오차범위 ±5%

3.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

- 시험결과가 경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수협의 인증부표 보급사업 조달업무 및 납품업무는 1개월 간 정지한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1개월 내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기간을 연장한다.
- 시험결과가 중결함 및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제품 재수거를 실시하여 부적합 항목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되, 내충격성 시험 부적합인 경우에는 동일부표에 대해 내충격성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 재시험에 따른 시료는 공장과 현장 모두에서 각 2개 이상은 수거하거나, 당해 연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3개를 수거하여 재시험하며, 1개라도 부적합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중결함 및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업체의 재시험 결과가 적합일 경우 경고조치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사후점검을 6개월 내 불시에 실시한다.
- 중결함 및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업체는 업체의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재시험결과와 업체의견을 바탕으로 품질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 ※ 1차 시험결과가 부적합(중결함 및 치명결함)에 해당되어 동일제품 재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수협이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대상 제품 및 동일부표에 대한 수협의 인증부표 보급사업 조달업무(부표 수·발주, 검수 등) 및 업체의 납품업무는 최종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4. 시료채취

- 인증부표 생산업체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표 3-1, 3-2, 3-3의 생산 및 납품일지 및 반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불성실하게 관리할 경우 차년도 인증부표 인증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여부 판단한다.
- 사후기관은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무작위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를 봉인한 후에 지정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 물품 계약으로 납품 이력이 확보된 미사용 시료
 - 수협, 어업인이 보관하고 있는 미사용 시료
 - 제조공장에서 납품목적으로 생산하여 보관 중인 시료

5. 부적합 최종 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가. 사후관리 최종결과 경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제품(동일부표 포함) 1개월 간 지원사업 납품정지
나. 사후관리 최종결과 중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부표(동일부표 포함) 인증취소 및 6개월 간 인증배제
다. 사후관리 최종결과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부표(동일부표 포함) 인증취소 및 1년 간 인증배제
라. 부정한 방법(자부담 대납, 허위납품 등)으로 판매하거나, 사후관리 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미인증부표를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판매한 경우	-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부표 인증취소 및 3년간 인증배제 - 사기 혐의 등 수사의뢰 또는 고발 검토

6. 의견서 제출

- ① 부적합(중결함 이상)일 경우 인증 받은 자는 인증기관에 소명,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을 부여한다.
- ② 인증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 요청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7. 인증처분결과 통보

- ① 인증기관은 사후관리 최종결과가 시정조치 또는 취소에 해당할 경우, 최종 처분 결과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 시정조치 또는 취소한 일자 및 사유
 2. 인증제품 중 시정조치 또는 취소된 제품목록

8. 인증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 ① 인증기관은 인증취소일로부터 해당 제품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중결함·치명결함으로 인증 취소된 경우 인증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기록[별지 제12호 서식]하여 관리한다.
- ③ 인증기관은 인증취소 시 인증 받은 자,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해당 처분기준에 관계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경결함은 해당 제품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를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중결함으로 일부 제품이 취소된 경우 부적합 항목에 따라서 어업인 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3. 치명결함으로 인증취소가 있는 경우, 수협중앙회는 최종 결함이 확인된 단가 계약상 제품명 등을 구매한 어업인들에게 통보하고, 업체는 어업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수거·대체납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결함·치명결함으로 수거 및 교환 요청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의 수거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인의 양식물 손해 등 선의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즉시 제품 수거 등 조치가 어려울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수거될 수 있도록 세부 수거계획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및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5. 수거 및 대체납품 등의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협중앙회로부터 발급받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1]

결 재	작성	승인

0000년 인증부표 생산일지

No	날짜	작업시간		LOT NO	품명/규격	수 량	장비 상태	원료 상태	제품 상태	비고
		시작	종료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3-2]

결 재	작성	승인

0000년 인증부표 납품일지

No	날짜	제품명	수량	단가	금액	납품요청자	검수수협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3-3]

0000년 반 품 관 리 대 장						
No	접수일	제품명	반품업체	수량 (개)	반품사유 및 개선내용	처리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1호 서식]

인증부표 품질인증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전자우편 (E-mail)				
사업장 주소				연락처	(TEL) (HP)			
공장 주소 (생산방법 체크)	<input type="checkbox"/> 자체생산 <input type="checkbox"/> 위탁생산			연락처	(TEL) (HP)			
신청부표 (상표명, 부표명 기입) , 시험성적서와 시료명이 동일 하여야 함								
부표형태		재질		규격		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사출형 <input type="checkbox"/> 발포형 <input type="checkbox"/> 연질 피복형 <input type="checkbox"/> 경질 피복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알루미늄 등)		예) PP, PE, (내부)OO, (외부)OO		예) 64L, Ø 30, 등		<input type="checkbox"/> 김 양식 <input type="checkbox"/> 굴 등 수하식양식용 <input type="checkbox"/> 어류가두리 뗏목용 <input type="checkbox"/> 그 외 양식용		
동일부표								
구분		가로 (mm)	세로 (mm)	높이 (mm)	무게 (kg)	부피 (L)	가로세로비	성적서 번호 (발급일자)
1	기준부표(부표명)							
2	동일부표(부표명)							
3	동일부표(부표명)							
4	동일부표(부표명)							
5	동일부표(부표명)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사에서 제작한 인증부표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품질인증용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발급), ②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록증(위탁생산인 경우 OEM계약서 추가), ③ 제품 규격 및 재질 관련 서류(물질보건안전자료(MSDS), 거래명세서, 운송장 등), ④ 제품 제조 관련 사진 및 설비 사진, ⑤ 기타(동일모델 증명서류, 거래명세서 등)

*부표의 형태 : 사출형(속빈 플라스틱 부표), 발포형(EPS 비포함 발포 부표), 연질 피복형(필름·시트 재질로 내부재료를 코팅), 경질 피복형(사출형 내부에 발포재를 포함), 기타(알루미늄, 페트) 등

[별지 제2호 서식]

인증부표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전자우편 (E-mail)	
사업장 주소		연락처	(TEL) (HP)
공장 주소 (생산방법 체크)	<input type="checkbox"/> 자체생산 <input type="checkbox"/> 위탁생산	연락처	(TEL) (HP)
품질인증서 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당사에서 제작한 인증부표의 품질인증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인증부표 품질인증서 ② 양도·양수 계약서 ③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속받은 경우), ④ 법인 등기부 등본(합병, 대표자 변경 등), ⑤ 기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설비 명세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제 2023-EF-01 호

인증부표 품질 인증서

상 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인 증 일: . . .

사 용 용 도:

인 증 부 표:

귀사에서 인증을 의뢰한 부표는 해양수산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별지 제4호 서식]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1. 신청자(□단체 □개인)					
어업의 종류 (양식 품종)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단체장) 성명			연락처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총부표보유량 (인증부표 보유량)			이전 지원여부	연도, 부표형태별 지원수량 ex) 2017 사출형 200개 2017 피복코팅형 100개	
2. 신청사업 규모 *단체의 경우 구성원 개별 현황 종합하여 기록					
부표 형태 ⁽¹⁾	규격(ℓ)	수량(개)	단가(원)	금액(원)	용도 ⁽²⁾
수 량 합 계			금액합계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보조사업자별)

(단위: 원, l, Ø, 개/ 원, 개, 톤, 루베)

시 도	시군구	사업자	인증부표 보급							페스티로폼 처리 지원								
			국비 교부액	집행액				부표명	규격	수량	국비 교부액	집행액			수거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개	톤	부피	
경 남	계																	
	통영시	소계																
		김영희																
		홍길동																
		○○○																
	남해군	소계																
		○○○																
		○○○																
		○○○																

[별지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품종별)

(단위 : 개, 천원)

품종별		당초 계획		부표 형태별 집행실적									
				합계		사출형		발포형 부표		피복 코팅형		기타(알루미늄 등)	
		수량	금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합계													
해조류	소계												
	김												
	미역												
	다시마												
	기타												
패류	소계												
	굴												
	홍합												
	가리비												
	전복												
	기타												
어류 등	소계												
	어류												
	우렁쉥이												
	미더덕												
	기타												
복합양식													
구획어업													

부표 형태 : 사출형(속빈 플라스틱 부표), 발포형(EPS 비포함 발포 부표), 피복·코팅형(EPS포함 발포 소재에 시트·폴리우레아·사출 피복·코팅), 기타(알루미늄, 페트) 등

인증부표 사용현황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면허자	품종별	면적 [㉠] (ha)	부표 형태	사용규격 (ℓ)	소요량 [㉢] (개/ha)	총소요량 [㉠] × [㉢] (개)	교체 주기 (년)
경남	통영	홍길동	홍합	20		58	2,000	40,000	3
						60	100	2,000	7~8
		이길동	홍합	30		58	1,800	54,000	3
						68	200	6,000	4
		최길동	가리비	5		60	200	1,000	3
						80	100	500	4
	100				40	200	5		
	거제				20∅			10	

* 작성시 유의사항

- 면허자 : 2인 이상인 경우 “홍길동 외 2인”으로 기술
- 면적 : 면허 받은 총 면적을 기술
- 부표형태 : 사출형(속빈 플라스틱 부표), 발포형(EPS 비포함 발포 부표), 피복·코팅형(EPS포함 발포 소재에 시트·폴리우레아·사출 피복·코팅), 기타(알루미늄, 페트)
- 사용규격 : ℓ 또는 ∅(타원형 사출 부표만 해당)
- 소요량 : 1ha당 사용량
- 총소요량 : 면적×1ha당 사용량
- 교체주기 : 어업인들이 사용한 연수 표기, 필요시 3~4년 등으로도 표기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9호 서식]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추진상황(○/반기) 보고 (○ ○ ○ 도)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개, 천원)

시군	2023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개)	예산				사업 물량 (개)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붙임: 인증부표 구매 어업인 사용 및 만족도 조사

시도명	시군구	어업인 (어업면허)	지원부표 품명	보급개수	사용현황(개)			애로사항
					설치	보관	폐기	

[별지 제10호 서식]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수요 조사서

- 보조율 :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
- 국비 신청액(천원) :
- 총 사업비(천원)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계획

(단위 : 개, 천원)

시·군·구	보조금 교부금액	합계		사출형		발포형		피복·코팅형		발포형 부표		기타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합계													

- 사업추진계획
 - 구체적인 추진일정 기재(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 선정 등)
- 부표형태 : 사출형(속빈 플라스틱 부표), 발포형(EPS 비포함 발포 부표), 피복·코팅형(EPS포함 발포 소재에 시트·폴리우레아·사출 피복·코팅), 기타(알루미늄, 페트)

2023년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실적관리

사군명	어업권 현황											2023년 인증부표보급사업지원내역(개)									
	1. 어업면허 및 양식방법					2. 어장위치				3. 어업권자(지분권자및행사계약자포함)		5. 주소						1제품			2제품
	면허 번호	면허 기간	면적 (ha)	양식 품종	양식 방법	시도	시군 구	읍면 동	리	성명	4. 지분(h a)	시도	시군 구	도로명 또는지번	업체 명	품목 명	규격	개수 (A)	개당공 급가격 (원) (B)	공급가격 (원) A*B	
00시		소 계																			
00시				다시마 전복	연승식					2											
00시				다시마 전복	연승식					4											
00시				다시마 전복	가두리식 과 연승식					3											
00시		소 계								17											
00시				홍합	수하식					5											
00시				홍합	수하식					19											
00시				홍합	수하식					10											

[별지 제13호 서식]

페스티로폼부표 처리 지원사업 추진상황(○/반기) 보고 (○ ○ ○ 도)

1. 사업명:
2. 회계명:
3. 사업주체:
4. 사업추진내용:
5. 추진현황

(단위: 개, 톤, 루베, 천원)

시군	2023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물량 (개,톤, 부피)	예산			물량			예산		
		국고	지방비	계	개	톤	루베	국고	지방비	계 (운반/처리)
										5,000 (1,000/4,000)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